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00
----------	------

2021년 6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5. 28. 추승우 의원 외 9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1. 6. 1.

다.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1년 6월 1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식재산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 부상하고, 2020년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시가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차원의 지원을 위해 ‘서울 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sup>1)</sup>은 지식재산 대중화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강화 및 지식재산 인재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무형적인 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부상했으며, 유형 자산 대비 지식재산의 규모와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sup>2)</sup>
  - S&P 500<sup>3)</sup>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은 2000년대 들어 50%를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84%, 2020년에는 90%를 차지하는 등<sup>4)</sup> 지식재산 등의 무형자산은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함.<sup>5)</sup>
-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한 특허권과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온라인 문화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더욱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지식 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 금융<sup>6)</sup>의 중요성도 확대됨.<sup>7)</sup>

1)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근거하여 구성됨.  
2) 지식재산증가 추세에 따른 국내IP금융 현황 및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21. 4.  
3)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사(Standard & Poor's)가 기업규모·유동성·산업대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보통주 500종목을 대상으로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수, 매일경제사전, 2021. 6.  
4) Ocean Tomo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Study.  
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 특허청, 2017. 11.  
6)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으로 IP 가치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이 IP 담보대출·IP 보증대출·IP 투자의 형태로 기업에 자금 제공  
7) 지식재산증가 추세에 따른 국내IP금융 현황 및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21. 4.

- 지식집약도가 높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선진국 기업 (구글, 애플 등)들의 지식재산권의 선점이 이뤄졌으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가 되는 조건 중 하나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을 제시함.<sup>8)</sup>
- 이와 같이 지식재산이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의 동력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2011년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과 관련 정책<sup>9)</sup>의 심의·조정·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설치해 체계적·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붙임 1).
- 최근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지식재산권 출원은 2019년 대비 9.1% 증가한 총 557,229건으로 집계됐으며,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2019년 1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지난해 2조 640억원을 기록<sup>10)</sup>했으나, 여전히 지식재산 투자는 미약한 수준이며 투자대상이라는 인식도 저조한 실정임.<sup>11)</sup>
- 한편 2012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를 제정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을 촉진하고 서울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
  - 현재 「지식재산도시, 서울 2차 추진 기본계획」에서는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의 IP활동 지원 확대, ▶지식재산 생태계 기반 공고화 등의 4대 전략을 기반으로 16개 분야별 투자계획을 담고 있음(붙임 2).

8) 「제2차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9) 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③ 지식재산 관련 자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④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10) 우리나라 지식재산(IP) 금융 2조원 돌파, 특허청 보도자료, 2021. 2. 4.

11)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특허청, 2020. 7.

○ 이외는 별도로 서울시는 「지식재산 기본법」이나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제정 전부터, 서울지식재산센터<sup>12)</sup>를 설치(2009년)해 서울 시민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IP 스타 기업 육성 및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등 현재까지 지식재산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지식재산센터 개소 이후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5,478건의 지식재산권 창출, 1,808건의 지식재산 보호, 5,971건의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육성지원 등 서울시민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18,330건의 다양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함.

<표-1>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 추진현황

(단위 : 건, 기업 수)

세부 사업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합 계	906	1,290	1,025	1,126	920	1,654	1,663	2,116	2,141	2,462	1,616	1,486	18,330
지식재산권 창출	403	362	404	455	320	836	633	793	786	169	167	5,478	5,478
지식재산권 보호	-	30	21	65	46	203	338	677	112	96	103	1,808	1,808
지식재산권 활용	-	-	-	-	-	15	23	1	20	20	27	1	107 (기업수)
지식재산권 교육	-	-	-	-	1	1	1	54	77	65	43	30	269
IP스타 기업 육성	455	892	582	601	549	558	612	568	271	287	272	324	5,971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48	6	18	5	4	41	56	76	310	344	114	43	826
IP상담·컨설팅	-	-	-	-	-	-	-	-	642	1,481	890	858	3,871

12) 운영근거: 「발명진흥법」 제23조,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4조  
운영기관: 서울산업진흥원(SBA)

- 서울시 지적재산권 현황('19년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159,745건으로 전국 (426,752건) 대비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국내출원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해외 출원의 경우 대기업 68.7%(33,277건)에 비해 중소기업은 20.9%로 여전히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sup>13)</sup>
- 따라서 서울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우수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 서울시민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공공 차원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최근 전국 최초로 서울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 진흥 및 지원사항을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조례」가 각각 제정·시행 (2021. 1. 7)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서울형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자치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지식재산의 가치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對 국민 인식·관심 제고와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해 활동 영역에 따라 필요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성결의안의 취지와 같이 서울시민의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13)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성과 및 방향, 서울지식재산센터, 2021.

- 다만, 현재 서울시의 지식재산 사업부서가 경제정책실이고 이를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될 경우 상임위원회와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과 혼란 우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구성될 경우 위원회 간 구체적인 역할 조정 및 업무 연계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서울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로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이나 지식재산 교육대상이 「초·중등 교육법」 제2조14)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음.
- 또한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 중인 사정을 고려할 때, 특별위원회 운영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치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15)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치 결과,
  -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실에서 ‘시민 지식재산’에

---

14)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15)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관한 업무를 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sup>16)</sup>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6)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추승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0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8일  
발 의 자 : 추승우, 김 경, 김제리,  
김희걸, 서윤기, 송명화,  
이영실, 최 선, 홍성룡,  
황인구 의원(10명)

##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 대중화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 인식 강화 및 지식재산 인재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2. 제안이유

- 지식재산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 부상하고, 2020년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시가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차원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다. 기타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시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대중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정책 기능의 총괄 조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2018년부터 매년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시민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은 55만 7,229건으로 2019년 51만 968건에 비해 9.1% 증가하고,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전년 대비 52.8% 증가한 2조640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가치 상승에 따라 각종 첨단기술,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각종 상표출원, 특허 취득 등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은 현재까지도 낮은 수준이고 이와 관련한 공공 차원의 교육도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일반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지식재산에 대해 ‘어느정도 알거나 거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 차원에서 시민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교육을 비롯한 인재양성 준비가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0년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한 바 있고, 의원연구단체인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설립하고 지식재산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 지식재산 교육과 지식재산 분야 인재양성을 선도한다는 의식 아래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및 지식재산 분야 인재양성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1.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